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12·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비상계엄 피해 배상·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5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2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개요 및 입법 필요성	3
2. 주요 내용별 검토	14
가.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4
나.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5
다. 배상위원회의 구성 등	20
라. 배상신청 등 절차	24
마. 배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재판상 화해)	29
바. 트라우마 치유사업	32
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4. 8.
3. 회 부 일 : 2025. 4. 14.

II.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시민들은 위헌·위법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결집하여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장갑차와 경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등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해 국회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음.

이와 관련하여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국회 직원들이 진압과정에서 찰과상,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우울·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2·3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배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6조).

IV. 검토의견

1. 개요 및 입법 필요성

- 제정안은 ① 12·3비상계엄사태(이하 “비상계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② 피해자 인정 여부 및 배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를 설치하며, ③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13조(피해배상 결정 등의 통지)
제2조(정의)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조(국가의 책무)	제15조(재심위원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5조(배상책임 등)	제17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6조(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	제18조(배상금 등의 환수)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19조(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9조(사실조사)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배상금의 지급신청)	제22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의견제출 등)	제23조(벌칙)
제12조(지급결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국가 배상책임	◦ 국가가 비상계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금 외 의료비 등 지원금도 지급 가능 ◦ 직무를 집행한 군인·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구상 가능 ◦ 배상 기준 및 지원금 지급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배상위원회	소속 및 구성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심의·의결 사항	① 국가배상에 관한 사항, ② 피해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실조사	◦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 ◦ 목격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배상 절차	① 배상금 지급신청 → ② 배상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③ 피해배상 결정 통지 → ④ 피해배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 ⑤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배상금 지급	
트라우마 치유사업	◦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¹⁾과는 달리,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²⁾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9조³⁾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배상법」⁴⁾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1)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하 생략)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하 생략)

3)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제정안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배상위원회’라는 행정적 피해구제 수단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국가배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법적 피해구제 수단(소송)의 경우 그 구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의 소송 수행능력에 따라 그 배상 결과에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 및 국민 소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배상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가배상 사건을 일괄 심의함으로써 사건 간 배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배상 업무의 공정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기존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예외적 상황이 있는 경우에 마련되는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다른 불법적 공권력행사 사건과의 형평성) 불법적 공권력행사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① 「국가배상법」 제10조5)에 따라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②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 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⁶⁾을 제기하기도 함.

○ 배상심의회는 국민이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본부심의회와 지구심의회가 있는데,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에서는 5천만원 이상 사건 및 전국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서 심의한 사건의 재심을 처리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국가배상 신청건은 총 9,970건에 이름.

<전국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건수	4,558	6,064	5,860	7,371	7,394	7,132	8,590	9,970

(자료: 「2024 법무연감」, 법무부, p.629,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통계 재구성)

- 5) 「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둔다. (이하 생략)
-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처리한다.
-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6)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관할하는데, 2024년 기준 총 4,069건이 접수되었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접수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배상 신청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음.⁷⁾

<국가(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연도별 접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건수	1,701	1,682	1,905	1,995	2,274	2,238	2,146	4,069

(자료: 「2024 법무연감」, 법무부, p.628,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통계 재구성)

- 그간 과거사 관련 특별법이 여러차례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가배상에 관한 사항⁸⁾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법」에 우선해 관련 배상·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과거사 관련 특별법 중에서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이 국가배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 절차 등을 거쳐야 함.

7)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국가소송사건수, 지표해석

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의 규정 내용>

구 분		관련 법률
배상규정있는 경우 (재판상 화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지원) 규정만 있는 경우	피해구제 위해 국가배상소송 별도제기 필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배상·보상 규정 모두 없는 경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또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들도 다수⁹⁾ 있는데, 특별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이들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결정이나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도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비상계엄 피해자를 다른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 보다 특별히 더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9) 예시: 형제복지원 사건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고 있음. 2025년 3월 27일 대법원 민사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법무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원심을 확정함(법률신문, 2025. 3. 28.).

□ (기존 법제도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인지 여부) 과거사

관련 특별법의 제정은 ① 긴급조치 등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¹⁰⁾하거나 ②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제¹¹⁾했던 과거의 판례로 인해, 「국가배상법」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가 컸음.

□ 그런데, 현재는 관련 판례가 변경되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장애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임.

○ 대법원은 긴급조치¹²⁾ 제9호 발령·집행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국민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¹³⁾

1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11) 과거사 사건의 경우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었다가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서, 2006.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2) 긴급조치란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국정 전반에 걸쳐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총 9차례 긴급조치를 선포함.

13)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련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됨”(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¹⁴⁾

○ 또한, 과거에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¹⁵⁾과 2022년 대법원의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후에는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와 ②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소멸시효 도과의 염려가 크지 않은 비상계엄 시점 등을 고려해, 이번 비상계엄이 기존 법제도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 비상계엄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4) 대법원 보도자료, 2022. 8. 30.

대법원은 종래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 판결 변경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된다고 보아, 과거에 행해진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하였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15)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16) 소멸시효와 관련해 객관적 기산점 적용 배제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민사1부는 2025년 4월 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ㄱ씨가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쪽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음.

1심에서 정부는 ㄱ씨가 출소(1983년)한 때를 기준으로 할 때,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인용하며 정부 주장을 배척함.

정부는 항소심에서 “늦어도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2018년 12월 28일자 대법원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보고, 이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음(한겨레, “대법원,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책임 잇따라 인정”, 2025. 4. 28.).

□ (법체계의 복잡성 및 행정비용) 제정안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비상계엄 피해자는 ① 제정안에 따른 배상위원회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②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및 ③ 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의 방법 중에서 피해구제 수단을 선택¹⁷⁾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배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제정안에 따른 배상위원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¹⁸⁾와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므로 행정비용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제정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비상계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국가배상법」 등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출함.¹⁹⁾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정안은 국민의 소송부담 경감 및 신속

17) 동 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결정전치주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피해자는 배상위원회 결정 없이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19) 추가로, 국무조정실은 법률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통상적 사례와 같이 계엄 관련 소관인 국방부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 국민구제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예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행안부), 무안 참사 특별법(국토부), 삼청교육피해자 보상법(국방부)

한 피해구제, 사건 간 배상금 관련 형평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국가배상법」 등 기존 법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다른 불법적 공권력행사 사건과의 형평성, 법체계의 복잡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정안은 “12·3비상계엄사태” 및 “피해자”의 의미를 정의(제2조)하고, 국가의 지원대책 수립 등 국가의 채무를 규정(제3조)하는 한편, 이 법이 비상계엄 관련 피해 배상에 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제4조)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3비상계엄사태”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질서 유린 사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채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3비상계엄사태에 관련된 피해 배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제정안 ① 국가가 비상계엄 피해를 배상해야 함을 규정하고, ②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피해자에게는 배상금 외에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배상 기준 및 지원금 지급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배상책임 등) ①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군인·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기준은 12·3비상계엄사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금 외에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국가배상법」²⁰⁾에 따른 국가의 배상책임 발생요건은 ①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²¹⁾, ②직무 집행²²⁾, ③고의 또는 과실²³⁾, ④법령 위반, ⑤타인, ⑥손해인데 반해, 제정안 제5조제1항을 따를 경우 ①타인, ②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만으로 그 요건이 축소됨.

□ 즉,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을 입증할 필요 없이 ‘타인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국가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제정안 제5조제1항은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간소화하여 보다 폭넓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모두 포함함.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임. 판례는 향토예비군,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를 한 통장, 수능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콜택시 운행업무를 위탁받은 시내버스회사 등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22)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법관의 재판이나 협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도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해당함(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집행’과 관련하여,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로 봄(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23) ‘고의’는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및 인용을 의미하며, ‘과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주의로 객관적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였거나 불충분한 것을 의미함(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바395 결정).

- 다만, 최근 판례는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 현행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 비상계엄을 다른 불법적 공권력행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2) 공무원에 대한 구상

- 제정안 제5조제2항은 비상계엄 관련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가 구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를 경우,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현행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과 다르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제정안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비교>

제정안	국가배상법
제5조(배상책임 등) ①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군인·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배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은 아래와 같이 월실수입을 고려한 배상, 요양비(치료비), 수리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됨.²⁴⁾

피해	국가배상
사망	월실수입 등을 고려한 유족배상
	장례비
상해	요양비(치료비)
	월실수입 등을 고려한 휴업배상
	월실수입 등을 고려한 장해배상
물건 멸실·훼손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수리기간 중 손실 관련 휴업배상
정신적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정도, 생계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 *사망, 신체장해, 상해, 명예침해 정신고통에 대해 위자료 기준표에 따라 지급(시행령 제5조)

□ 그런데, 제정안 제5조제4항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금 외에 ‘의료비 등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비상계엄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금 외에 별도의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다수의 불법적 공권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배상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비상계엄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 24)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 ④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배상위원회의 구성 등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비상계엄 관련 배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배상위원회를,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등).

제 정 안
제6조(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 ①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배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배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배상 및 보건 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사람 ④ 배상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배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배상금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배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배상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국가는 12·3비상계엄사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금 외에 의료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실조사) ① 배상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배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배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3비상계엄사태 목격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3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실조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 정 안
이 경우 “배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배상위원회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비밀준수 의무) 배상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배상위원회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배상위원회등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배상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① (생략) ②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 제정안은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 분	배상위원회	재심위원회 (배상위원회 규정 준용)
소속 및 구성	◦ 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심의의결 사항	① 국가배상에 관한 사항, ② 피해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③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배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배상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
사실조사	◦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조 요청 ◦ 목격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제정안에 따르면,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및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그 의결과정에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각 중앙부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 준비 및 진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데,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주관적 기산점)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객관적 기산점)이므로 최대 2029년 12월까지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피해자의 배상금 지급신청(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청)에 대해 지급결정(신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을 하는 한시적 업무²⁵⁾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업무 처리 기간에 맞는 적절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위원회 및 사무기관 상설화로 인한 행정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임.

25) 제정안 제10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결정) ① 배상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6)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

【참고사항】

동 제정안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배상법」 역시 그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법 제8조²⁶⁾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²⁷⁾,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²⁸⁾ 등이 적용됨. 즉,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주관적 기산점)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객관적 기산점)이 되고, 이 중에서 하나만 먼저 도래해도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됨.

라. 배상신청 등 절차

- 제정안은 배상금 지급신청, 배상위원회의 지급결정, 결정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상금 환수 등 피해 배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등).

제 정 안
제10조(배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7)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하 생략)

28)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후 략)

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견제출 등) ① 신청인은 배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배상위원회에 의료인이나 관련 전문가(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의료인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급결정) ① 배상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배상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피해배상 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배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배상금 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배상금

제 정 안
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금 또는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배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배상금 또는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²⁹⁾ ② (생략)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정안은 과거사 특별법들의 배·보상 절차 관련 입법례와 유사한데,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배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하게 수령한 배상금은 환수하려는 것임.

29) 유사 입법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미수범)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정안에 따른 배상 절차

- ① 배상금 지급신청(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 ② 배상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③ 피해배상 결정 통지
- ④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 ⑤ 배상(재심)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신청
- ⑥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배상금은 환수

1) 배상 신청자

□ 안 제10조제1항은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배상위원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안 제2조제2호³⁰⁾는 “피해자”를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배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해자 결정’을 배상 신청의 선행 절차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배상 신청 대상자를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³¹⁾하는 것이 법문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30)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해자”란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1) 유사 입법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법제2조제2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배상 신청기한

□ 제정안 제10조제2항은 배상금 지급신청기한과 관련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³²⁾의 경우에는 제정안과 유사하게 원칙적 기한과 예외적 기한을 모두 규정한 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³³⁾은 예외적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예외적 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경우 ① 피해구제 신청이 산발적으로 접수되어 행정의 비효율이 있을 수 있고, ② 국외 거주자에게 비상계엄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③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예외적 배상신청 기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3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마. 배상금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재판상 화해)

- 제정안은 배상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 등이 동의한 경우 국가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등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등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³⁴⁾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시 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지급 결정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³⁵⁾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그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지급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기판력³⁶⁾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3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상심의회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회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로, 배상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정안 제17조는 지급결정 동의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배상금 지급절차를 이행·종결시킴으로써 국가배상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고, 배상금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문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하지만, 일부 과거사 사건 배상과 관련해, 지급결정 동의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부여 규정이 있었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 별도 행사 필요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이는 「국가배상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의 국가 배상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포함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보상에 동의한 것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³⁷⁾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배상

36) 기관력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

37)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결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법상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위헌임.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제정안 제5조제3항³⁸⁾은 배상금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기준과 동 제정안의 배상기준이 상이할 경우 배상위원회의 결정 후에 따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배상금 기준은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한편, 제정안은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경우 제정안에 따른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³⁹⁾은 재판상 화해 효력규정과 함께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은 경우 관련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8) 제정안 제5조(배상책임 등)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기준은 12·3비상계엄사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바. 트라우마 치유사업

- 제정안은 국가가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2·3비상계엄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트라우마 치유사업이나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입법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필요성과 현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

- 제정안은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피해자 결정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배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이하 “배상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결정, 배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배상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⁴⁰⁾’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⁴¹⁾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0)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4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u>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u>
2.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제정안 제20조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6조⁴²⁾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배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피해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보임.

□ 그러나,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고, 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데,

4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정안의 법문상 구체적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로는 적절해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직접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그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구체적 사업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음.⁴³⁾

문 의 처
02)6788-5113

4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의 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지급결정,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지급결정 등과 관련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에 관한 사무